

이슈페이퍼 2013-11

유치원 설립·운영 기준 제안

최은영

차례

1. 배경 및 문제점	1
2. 유치원 설립·운영 관련 법규	2
가. 유치원 설립 관련 법규	2
나. 유치원 운영 관련 법규	4
3. 일본과 미국의 유치원 설치 법규 및 기준	8
가. 일본의 설치·설비 법규	8
나. 미국의 공간과 설비 관련 기준	10
4. 논의 및 정책 제언	12
가. 결과 및 제언	12
나. 유치원 설립 기준 제안	14
참고문헌	20

표 차례

〈표 1〉 유치원의 설립	2
〈표 2〉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4
〈표 3〉 교육과정 운영	5
〈표 4〉 지도·감독 및 평가	6
〈표 5〉 교직원	7
〈표 6〉 교육비용	8
〈표 7〉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9
〈표 8〉 ECERS-R 및 SACERS의 공간과 설비 기준	11
〈표 9〉 NAEYC 유아연령별 집단 크기	12
〈표 10〉 교사 면적 기준 제안	15
〈표 11〉 실외놀이터 면적 기준 제안	16
〈표 12〉 공간 배치 기준 제안	17
〈표 13〉 인력 배치 기준 제안	18
〈표 14〉 학급당 유아 수 최저·최대 기준 제안	18

1. 배경 및 문제점

-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유치원이 설립된 이래로 공립유치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한국교육개발원, 2006)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 비해 물리적 환경의 질적인 측면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임.
 - 공립유치원 전용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6개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교무실 설치 원수의 비율과 실외놀이 설치원수의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2003).
 - 부산 서남부 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우 실외활동 공간을 유치원 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유치원 시설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유치원은 단 1개소뿐임(강석, 2010).
 - 경기지역 병설유치원을 조사한 결과, 실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실내에서 실외놀이터로의 출입시설이 불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김용미·김미화, 2006).
- 공립유치원의 물리적 환경 조건이 열악한 원인은 초등학교 병설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유치원을 먼저 개원한 후 사후에 연차적으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지적함(정혜순, 2008).
 - 단설유치원의 경우 2012년 현재 164개원으로 늘어났으나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3.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2. 3월 기준) 공립유치원 설치, 확충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교육의 실현은 교육비와 보육료의 지원 확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교육이 정립되려면 보편적 교육과정의 실현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환경을 갖춘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에 본 글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설립·운영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원고는 2012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보고서인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최은영·황성은·황우상)'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 유치원 설립·운영 관련 법규

- 1997년 처음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논의된 이래 수차례의 입법 시도 끝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월 29일에 동시행령이 제정됨. 이후 2005년 3월에 일부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제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함.

가. 유치원 설립 관련 법규

1) 유치원의 설립

- 유아교육법 제2장 제8조에 의하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2010.3.24 개정).
-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이 병설될 수 있음(2010.3.24 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 제8조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31.)고 제시됨.

〈표 1〉 유치원의 설립

구분	내용	관련 법
설립기준 및 설립주체	- 유치원의 설립 및 설립 기준	- 유아교육법 제2장 제8조
병설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	- 유아교육법 제9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설립·폐쇄 인가	- 일정한 기준 충족 시 인가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유치원: 시도교육감	- 유아교육법 제8조, 10조

2) 유치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규정 제3조 2항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사 면적은 정원이 40명 이하인 경우 5*(전 학년 학생 정원)m², 정원이 41명 이상인 경우 80 + 3*(전 학년 학생 정원)m²로 정해져 있으며(2007.5.2 개정), 체육장의 경우 정원이 40명 이하는 160m², 정원이 41명 이상인 경우 120 + (전 학년 학생 정원)m²로 명시됨.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1인당 2.64m²), 유치원의 경우 보통교실 및 보육실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관련 별표 2에 근거하여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유치원 설비의 경우 환기, 채광, 조명, 온도와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보통교실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조리실의 경우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제시함(2011.12.30 개정).
- 급식시설의 설비기준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별표 1에 안내되어 있음.
 - 일반적인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따르되 조리실과 설비·기구, 식품보관실에 대한 세부기준은 추가적으로 언급됨.
 - 조리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2010. 6. 8. 전문개정).

〈표 2〉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구분	내용	관련 법
교사 면적	- 5N(40명 이하)m ² - 80+3N(41명 이상)m ²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규정 제3조 2항(별표 1)
시설 임대	불허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규정 제7조
시설 처분	매도·담보제공 금지	-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설치 위치	- 1, 2층 원칙 - 200m 내 유해시설 없는 곳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별표 2)
실외놀이터(체육장)	- 160m ² (40명 이하) - 120+N(41명 이상)m ²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규정 제3조 2항(별표 1)
조리실 설비 기준	- 교차오염 방지 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 원칙 - 내부벽, 바닥 및 천장 재료 및 재질에 대한 기준 - 조리실 필수 설치 설비(출입구, 창문 방충망 등) - 조명, 냉방기준 등 제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1항(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 25)

나. 유치원 운영 관련 법규

-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지도·감독 및 평가, 교직원, 교육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2012. 3. 21. 개정).
- 방과 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2012. 3. 21. 개정).
- 수업일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되,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2011. 10. 25. 개정).

- 학급편성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하되,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2010. 5. 31. 전문개정).
- 유치원의 경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함(2010. 5. 31. 개정).

〈표 3〉 교육과정 운영

구분	내용	관련 법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 교육부장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결정 -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의미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 -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수업 일수	- 매 학년도 180일 이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학급 편성	- 같은 연령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 -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 없음(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 지도·감독 및 평가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8조에 따르면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2010. 3. 24. 개정).
 -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으며(2012. 1. 26. 개정), 유아교육법 제2장 제19조 1항에 의거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2012. 1. 26.).
- 평가에 대한 세부 항목 중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항에 의거 국립·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2012. 3. 21 본조신설).

-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2012. 3. 21. 본조신설).

〈표 4〉 지도·감독 및 평가

구분	내용	관련 법
지도·감독	-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공립·사립유치원: 교육감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8조
장학 지도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 지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평가	- 운영실태 평가 - 국립유치원 유치원회계 설치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제2장 제19조 1항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 - 유아교육법 제19조 3

3) 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2011. 7. 25. 개정).
 -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됨.
 - 여기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하되,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시됨.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음.
 - 다만, 유치원별 방과 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함(2012. 4. 20. 개정).
- 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에 따른 교사배치와 관련된 법령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다만 유치원에는 학급 수에 따라 보직교사를 추가적으로 둘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1명,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2명,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3명의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2010. 5. 31. 전문개정).

〈표 5〉 교직원

구분	내용	관련 법
교원	-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 두지 않음.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원 외	-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
교원 배치	- 학급마다 교원 1명 배치 - (2학급 이하인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음.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방과 후 과정 교사	-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배치 가능 - 배치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보직 교사	-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 1명 -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 2명 - (12학급 이상) 3명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4) 교육비용

-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4장 제24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2012. 3. 21. 개정).
- 방과 후 과정 운영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4장 제33조에 명시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음(2012. 4. 20. 개정).

- 수업료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국립유치원은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음.
- 단위 법령에 근거하여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의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됨(2013. 3. 23. 전문개정).

〈표 6〉 교육비용

구분	내용	관련 법령/법
무상교육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유아교육법 제4장 제24조
방과 후 과정 운영비용	-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4장 제3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수업료	- 국립유치원은 원장이 결정 - 공립유치원은 교육감이 결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3. 일본과 미국의 유치원 설치 법규 및 기준

가. 일본의 설치·설비 법규

- 일본의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은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의 기준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유치원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됨(표 7 참조).
- 설치 기준의 내용을 보면 학교교육법 27조에 근거하여 학급당 유아 수는 35명 이하이며, 교원의 경우 유치원에는 원장 외에 각 학급 당 주임교사와 지도교사 또는 교사를 한명 배치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부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양호교사, 영양교사, 사무교원, 양호보조교사 등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 실외 운동장 면적의 경우 1학급의 경우 $360m^2$, 2학급은 $390m^2$, 3학급은 $400m^2$, 4학급은 $480m^2$ 이었다. 실내 면적의 경우, 1학급은 $180m^2$, 2학급은 $320m^2$, 3학급은 $420m^2$, 4학급은 $520m^2$ 임.
- 교실, 놀이실(교실과 사용겸용 가능)을 포함하여 보육소의 최저기준에는 없는 직원실의 설치 및 운동장(마당)의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음.
- 학급의 편성과 교직원의 배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교사 대 유아 수에 대한 비율이나 실내·외 교구 및 설비 및 배치와 관련된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설치자 부담주의적인 사고가 강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치기준 개선의무에 대한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책임지고 있음.

〈표 7〉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1 직원의 배치와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경우 학교교육법에 명기됨. (관련법은 교육공무원특별법, 교육직원면허법) 1. 직원의 배치와 직무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7조1항 - “유치원은 원장, 교감 그리고 교원을 두어야 한다.” 2) 2항에서 “부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양호교사, 영양교사, 사무교원, 양호보조교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3) 4항에는 원장의 직무, 5항에는 부원장의 직무, 6항에는 교감의 직무, 7항에는 주임교사의 직무, 8항에는 지도교사의 직무, 9항에는 교사의 직무를 정함.
2 학급 규모와 교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설비기준 (성령)에 규정됨. 1. 학급 규모에 관하여 3조에서 “한 학급의 유아 수는 3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기 2. 교원의 배치는 5조, 6조에서 명기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조1항 - “원장 외에 각 학급 당 전임 주임교사, 지도교사 또는 교원 한명을 배치하여야한다” 2) 6조 - “양호를 담당하는 주임교사, 양호교사 또는 양호보조교사, 그리고 사무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표 7 계속)

구분	세부내용
3 대지면적 및 운동장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설비기준 (성령)에 규정됨. 1. 8조2항- “시설건물 및 운동장은 동일한 부지 내 또는 근접한 곳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칙2항 별표2에서는 운동장의 면적을 2학급 이하는 $330 + 30 \times (\text{학급 수}-1) m^2$, 3학급 이상은 $400 + 80 \times (\text{학급 수} - 3) m^2$ 로 규정. 2학급(70명)이면 360m² (유아 한 명당 5.1m²), 4학급 (140명)인 경우 480m² (유아 한 명당 3.4m²)
4 시설건물과 교실의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설비기준 (성령)에 규정됨. 1. 9조- 직원실, 학급 수별 교실, 놀이방, 보건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과 놀이실 또한 직원실과 교실을 서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 11조에서는 갖추도록 노력해야하는 시설로서 급식시설, 도서관, 회의실 등을 명기 2. 부칙2항 별표1에서는 시설건물의 면적은 한 학급(35명) 당 180m², 2 학급 이상은 $320 + 100 \times (\text{학급수}-2)m^2$ → 4학급 (140명)의 경우 520m²로 규정. 3. 8조1항에서 시설건물은 2층 이하가 됨을 원칙으로 함. 2층 이상에 교실 등을 설치 할 경우, 내연건축물로 유아의 대피 상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자료: <http://yamashikodomo.jp/yokijun.htm>. (2012. 4. 28일 인출)

나. 미국의 공간과 설비 관련 기준

- 미국의 North Carolina 대학의 FPG아동발달 연구소에서 개발된 ECERS-R 기준은 7개의 하위항목, 공간과 설비, 일상생활, 언어 및 논리, 활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 위한 영역으로 구분됨.
- SACERS은 총 49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7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는 공간과 설비, 건강과 안전, 활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특별한 쓰임을 위한 보충 교재영역임.

〈표 8〉 ECERS-R 및 SACERS의 공간과 설비 기준

ECERS-R	SACERS
1. 실내 공간 2. 보호, 놀이, 학습 위한 가구 3. 휴식을 위한 가구 4. 놀이를 위한 공간배치 5. 개인 공간 6. 유아작품 전시 공간 7. 대근육 활동 공간 8. 대근육 활동 도구	1. 실내 공간 2. 대근육 활동 위한 공간 3. 개인 공간 4. 교실 배치 5. 보호 위한 가구 6. 학습 및 활동 위한 가구 7. 휴식을 위한 가구 8. 대근육 활동 위한 가구 9. 시설과의 접근성 10. 교사 개인 공간 11.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공간

자료: 1) <http://ers.fpg.unc.edu/node/82>
 2) <http://ers.fpg.unc.edu/node/151>
 위 자료를 축소 편집함.

- ECERS-R와 SACERS 모두 실내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위한 가구, 교실 배치, 휴식 공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령기 유아를 위한 SACERS의 경우 교사를 위한 공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ECERS-R은 유아들이 때때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활동과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룹과 떨어진 공간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개인만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SACERS은 방과 후 수업을 듣는 만 5~12세 아동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실내가 청결하며, 안락하며, 관리가 잘 되어 있기를 권고함. 또한 채광과 실내온도 및 아동들의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언급함.
 - 개인 공간의 경우, ECERS-R과 유사하게 대그룹 활동으로 인하여 아동이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차단시켜주면서도 교사의 시야권 내에 위치한 개인 공간에서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키워줄 것을 권고함.
 - 교사 개인공간의 경우, 아동용과 분리된 교사용 화장실, 교사의 개인 소지

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교사 휴식을 위한 성인용 가구가 놓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공간으로는 개인적으로 업무에 사용할 전화가 있어야 하고, 교사들을 위한 사무공간과 파일 캐비닛과 같은 사무용 가구가 필요하며, 교실과 분리된 학부모 상담실이 있어야 함.

- NAEYC에 의하면 유아 1인당 필요한 실내공간은 최소 35ft²(3.25m²)이며, 실외공간은 최소 75ft²(6.97m²)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또한 실내공간은 유아의 발달과 연령에 맞는 역할놀이 비품, 감각교구(모래, 물, 찰흙, 물감, 블록), 영역교구(언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화장실·식수대·세면대는 실내공간에서 1.2m이내에 있어야 함.
- 실외공간은 단일놀이 혹은 그룹놀이에 적합한 공간의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역할놀이, 블록영역, 미술활동영역, 자연환경 탐험공간의 필요성과 더불어 위험물 부근에 안전선을 설치할 것을 권고함.
- 한편, NAEYC는 학급당 유아 수 기준과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최대 24명을 넘지 않으며, 교사 대 유아 비율은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1/2정도로 제시함.

〈표 9〉 NAEYC 유아연령별 집단 크기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						
		12	14	16	18	20	22	24
Preschool	만 2.5~3세	1:6	1:7	1:8	1:9			
	만 4세			1:8	1:9	1:10		
	만 5세			1:8	1:9	1:10		
Kindergarten	만 5세					1:10	1:11	1:12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s "Guidance on NAEYC Accreditation Criteria", October, 2012. 위 자료를 축소 편집함.

4. 논의 및 정책 제언

가. 결과 및 제언

-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을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유치원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학교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이 유치원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준에 대한 명시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 유치원 교사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 규정 제3조 2항에 별표 1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 면적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령별 필요 공간을 산출하여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장 면적도 학급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법에는 면적에 대한 기준과 조리실의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필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을 권장하고 있음.
 - 일본의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에 의하면 직원실, 학급 수별 교실, 놀이방, 보건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함.
 - SACERS는 교사를 위한 공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유아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공간을 고려한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급 편성과 관련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하면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지역 간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편차가 큰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만 5세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11. 7. 25. 개정)고 되어 있으며, 교원 외의 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1, 2학급 병설유치원은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행정인력과 전담 원감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유치원 설립 기준 제안

1) 유치원 설립 기준의 구체화

가) 면적 기준

- 공간의 밀도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교수학습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시설·설비 등의 설립 기준이 유치원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준에 대한 명시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 유치원 교사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 규정 제3조 2항에 별표 1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¹⁾ 면적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사 면적은 공립이 2.9m², 사립이 7.2m²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의 2배가 넘는 상황임.
 -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1인당 최소 연면적은 4.29m², 보육실²⁾ 면적은 1인당 2.64m²로 제안함.
 - 일본은 시설건물의 면적을 한 학급당 180m², 2 학급 이상은 320 + 100 x (학급수-2)m², 4학급(140명)의 경우 520m²로 규정하여 1인당 면적을 계산하면 1학급은 5.1m², 2학급은 4.6m², 3학급은 4.0m², 4학급은 3.7m²로 학급규모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NAEYC는 유아 1인당 필요한 실내공간을 최소 35ft(3.25m²)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1인당 최소 면적은 6.8m², 영아 보육실의 면적은 3.2m², 유아교실과 보육실의 면적은 3.0m²로 법적 최소 기준을 제안한 바 있음.
- 현재 유치원의 교사 면적 기준은 정원이 40명 이하는 1인당 5m², 41인 이상인 경우는 유아 수가 증가할수록 면적이 줄어들도록 되어있는데, 공립유치원의 1학급 규모는 최대 3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대 30명을 기준으로 하되 학급당 유아수의 적정 기준을 산출하여 재조정되어야 함.

1)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함.

2)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한 면적임.

- 또한 연령에 따른 유아의 신체활동의 동선과 필요 공간에 따른 면적에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검토한 자료와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면적 기준을 제안함.

〈표 10〉 교사 면적 기준 제안

근거	유아 1인당 면적 기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규정	40명 이하 1인당 5m ²
교육통계연보(2011)	공립유치원 2.9m ² , 사립유치원 7.2m ²
영유아보육법	4.29m ²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1학급 5.1m ² , 2학급 4.6m ² , 3학급 4.0m ²
NAEYC(실내공간 기준)	3.25m ²
김은영 외(2009)	6.8m ²
면적 기준 제안	(2학급, 학급당 유아 수 25명 기준) 5.5m ²

- 실외놀이터(체육장) 면적도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 규정 제3조 2항에 별표 1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40명 이하는 160m²로 1인당 4m²이며, 41명 이상은 120m²를 기준으로 1인당 1m²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음.
- 교육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유아 1인당 교지³⁾ 면적은 공립이 6.2m², 사립이 13.3m²로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1/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보육법(2009. 7)에는 영유아 1인당 3.5m²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기관규모에 따라 2학급 이하는 330 + 30 x (학급 수-1), 3학급 이상은 400 + 80 x (학급 수 - 3)로 규정하여 2학급은 유아 1인당 5.1m², 4학급은 유아 1인당 3.4m²이며, NAEYC는 유아 1인당 필요한 실외공간은 최소 75ft(6.97m²)로 제안함.
 - 김은영 등(2009)에 의하면 실외놀이터의 최소 면적 기준을 영아는 1인당 4m², 유아는 1인당 4.5m²로 제안하였으며, 박성철·조진일·최형주·임성근·엄정애(2011)의 연구에서는 만 3~5세의 교실의 면적을 유아 1인당 3.6m²로 실외교육공간은 1인당 3.5m²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신설 소요경비를 산출한 바 있음.

3) 교사용 대지 및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

- 유치원 실외놀이터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최소학급 기준을 우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면적을 산정하여 현재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외놀이터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1〉 실외놀이터 면적 기준 제안

근거	유아 1인당 면적 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별 설립·운영 규정	40명 이하는 160m ² 로 1인당 4m ² 이며, 41명 이상은 120m ² 를 기준으로 1인당 1m ² 추가
교육통계연보(2011)	공립유치원 6.2m ² , 사립유치원 13.3m ²
영유아보육법	4.29m ²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2학급 5.1m ² , 4학급 3.4m ²
NAEYC(실내공간 기준)	3.5m ²
김은영 외(2009)	(유아) 4.5m ²
면적 기준 제안	(2학급, 학급당 유아 수 25명 기준) 4.5m ²

나) 공간 배치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면적에 대한 기준과 조리실의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필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에 의하면 직원실, 학급 수별 교실, 놀이방, 보건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은영 등(2009)이 실 구성에 대한 법적기준을 제안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필수 공간으로 교실, 화장실, 유희실, 조리실, 식당(유아), 교사실, 자료실이 포함되어 있고, 권장 공간은 낮잠실, 조유실(영아), 보건실, 원장실이었음.
 - SACERS는 교사를 위한 공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교사 개인공간의 경우 아동용과 분리된 교사용 화장실, 교사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교사 휴식을 위한 성인용 가구가 놓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유아를 위한 필요 공간뿐 아니라 교사의 개인 공간과 전문성 계발을 위한 공간을 검토하여 유치원의 필요 공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간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2〉 공간 배치 기준 제안

근거	공간 배치 기준
영유아보육법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직원실, 학급수별 교실, 놀이방, 보건실 등
김은영 외(2009)	- 필수 공간: 교실, 화장실, 유희실, 조리실, 식당 (유아), 교사실, 자료실 - 권장 공간: 낮잠실, 보건실, 원장실
공간 배치 기준 제안	- 필수 공간: 교실, 화장실, 유희실, 조리실, 식당, 교사실, 자료실, 방과 후 교실, 보건실 - 권장 공간: 연구실

다) 인력 배치 기준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11. 7. 25. 개정)고 되어 있음.
 - 현재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의 원감 배치율은 3학급 이상 714개원 중 413명 배치(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2. 6)되어 원감 배치율이 57.8%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3학급 이상 공립유치원의 원감 배치가 시급한 상황임.
 - 또한 교원 외의 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1, 2학급 병설유치원은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행정인력과 전담 원감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과 후 교사 다음으로 보조교사, 행정원, 취사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유치원의 경우 보조교사의 배치 여부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음.
- 공립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과 권장 인력을 구분하여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력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3〉 인력 배치 기준 제안

근거	인력 배치 기준
유아교육법 제20조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영유아보육법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양호교사, 사무직원
김은영 외(2011)	방과 후 교사, 보조교사, 행정원, 취사원
인력 배치 기준 제안	- 필수배치 인력: 원감, 담임교사, 방과 후 교사, 행정직원, 조리사 - 권장배치 인력: 수석교사, 보건교사

2) 학급당 유아 수 최저/최대 기준 법제화

- 학급 편성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하면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역 간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편차가 큰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만 5세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음.
- 2012년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⁴⁾인 28명보다 많아 자체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4〉 학급당 유아 수 최저·최대 기준 제안

근거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유아교육법 제20조	관할청이 정하도록 위임
영유아보육법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 만 5세: 20명
일본 유치원 설치·설비 기준	35명 이하
정계영·박은혜(2008)	만 3세: 13~18명, 만 4세: 15~20명, 만 5세: 16~21명
최은영·황성온·황우상(2012)	만 3세: 10.81명, 만 4세: 15.17명, 만 5세: 19.12명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제안	만 3세: 10명(최저), 15명(최대) 만 4세: 15명(최저), 20명(최대) 만 5세: 20명(최저), 25명(최대)

4)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는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매년 학생 수와 교사 수 등을 고려해 학생 수용 인원 지표를 짜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있음.

-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준의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급당 유아 수의 최저 기준과 최대 기준을 법제화하고, 시도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석(201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실내의 활동공간에 관한 특성 조사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2. 3). 공립 시군구별 유치원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1990~2011). 교육통계연보.
- 김용미·김미화(2006). 경기지역 병설유치원의 체육교육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7, 21-42.
-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운영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성철·조진일·최형주·임성근·엄정애(2011). 공립유치원 신설 소요경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혜순(2008). 한국 국공립 유치원의 변천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 연보.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2003). 제12호 회보.

<웹사이트>

<http://www.law.go.kr/>

<http://ers.fpg.unc.edu/node/82>

<http://ers.fpg.unc.edu/node/151>

<http://yamashikodomo.jp/yokijun.htm>